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国内事件

商標 拒絶査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6. 7. 22)

事件番號：85 후 108

裁判長：박우동

關與法官：김형기·정기승·김달식

1. 審判請求人(上告人)：독일 노러스 세이크스페어 계엠배하(대표: 케르트쿠스)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特許廳長
3. 原審決：特許廳 1985. 8. 31字, 1984年 抗告審判(絕) 第596號 審決
4. 主文：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の 부담으로 한다.
5. 理由：

上告理由를 본다.

登録商標의 指定商標 추가登錄出願(앞으로 본원상표라 부른다)을 함에 있어 登錄商標의 登錄 이후 위 본원상표 이전에 다른商標(앞으로 引用商標라 부른다)가 登錄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 商標法 第9條第1項第7號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登錄商標의 出願時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出願時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이 이와 같은 절해 아래 登錄 第34786號 商標의 指定商標의 추가登錄出願인 본건에 있어서 登錄 第34786號 商標의 登錄 이후, 指定商品의 추가登錄 出願 이전에 引用商標가 登錄되어 있는 경우, 본원상표가 商標法 第9條第1項第7號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登錄 第34786號 商標의 出願時가 아니라 본원상표 出願時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본원상표 出願 당시(1982. 12.

30)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引用商標가 본원상표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同種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商標法 第9條第1項第7號의 규정에 해당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현행 商標法 시행규칙(1981. 8. 31改正, 商工部令 641號)이 낚시용구류를 별표 I의 43류에 구분하였다고 해서 登錄商標 第34786號 出願登錄 당시 시행되던 商標法 시행규칙(1973. 12. 31商工部令 第404號로改正되기 전의 것) 별표 I의 43류에 낚시용구류의 구분이 없는 것은 곧 낚시용구류가 당시의 별표 I, 43류의 유희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上告를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の 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